

제 292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6.3.20.)

조례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혜진]

목 차

1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행복나눔과	1
2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행복나눔과	12
3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보건정책과	19
4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행 정 과	26
5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교육과	35
6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교육과	45
7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교육과	52
8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 무 과	60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재 무 과	67
10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략담당관	72
11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수탁 협약 체결)	관광진흥과	82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6. 3. 6.

나. 발 의 자: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6. 3. 6.

2. 제안이유

- 장애인이 인권침해 및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안 제4조)

라. 시설점검 및 점검 인력 확보(안 제5~6조)

마. 협력 체계 구축(안 제7조)

바.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사.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조·제8조,·제9조·제58조
-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행복나눔과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2. 13. ~ 2026. 2. 2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5) 참고: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 책무 이행을 위한 자치입법 필요
- 교육·홍보를 통한 사전 예방 기능 강화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호·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목적 및 내용이 부합하며 상충 규정 없음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필요시

- 조례안에 따라 인권침해 예방교육, 피해자 법률자문·심리상담 및 보호지원 사업 등에 예산이 수반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의무적·자동적 지출구조는 아님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자치사무 범위 내 규정으로 법적 안정성 확보. 다만, 인권침해 판단 기준의 모호성 및 중복지원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 협력체계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지역 차원의 공적 보호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5년 9월 장애인 학대 신고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함.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 설치된 장애인학대전담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장애인 신고·접수 현황 및 사례분석 결과 등을 포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4 장애인학대 주요 내용

-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건수는 6,031건이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3,033건(50.3%)
 - 학대의심사례 중 비신고의무자 신고 2,236건(73.7%), 본인신고 612건(20.2%)
- 학대판정사례 1,449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16,514회 실시
- 학대피해자 10명 중 7명(71.1%)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4.7%, 뇌병변장애 6.8%, 자폐성장애 6.4% 순
- 학대 행위자는 지인 2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5.7%, 부(父) 10.4% 순
-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5.0%, 장애인거주시설 12.7%, 행위자 거주지 7.4% 순
-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3.6%, 정서적 학대 26.5%, 경제적 착취 18.6% 순
-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8.6%(270건)를 차지

-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를 살펴보면, 2024년 전국 장애인권의 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6,031건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3,033건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함.

- 또한, 학대판정사례는 1,449건(47.8%)으로 전년 대비 31건 (2.2%) 증가하였고, 전체 학대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1.1%(1,030건)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피해장애인 연령대: 10대 이하 330건(22.8%), 20대 328건(22.6%), 30대 262건(18.1%) 순임

-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33.6%(69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26.5%(547건), 경제적 착취 18.6%(384건) 순으로 나타남.

☞ 전체 학대사례 중 31.7%(460건)이 중복 학대

-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 및 학대 조사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역기관 추가 설치 및 신속한 초기 대응은 물론 학대예방, 홍보활동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있음.
- 해당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및 제34조제5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장애인 보호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체계와도 부합되고,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규정된 자치입법으로서 법적 타당성도 확보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인권침해 범위의 해석, 관계기관 협력체계, 개인정보 보호, 예산 지원 기준 등은 상위법령 및 기존 행정체계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 인권침해 및 학대범죄의 적용 범위를 상위법과 연계하여 명확히 운영할 것
 - 경찰·복지기관·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체화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것
 - 신고 및 지원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절차를 철저히 마련할 것
 - 예산 지원의 대상·범위·절차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 등의 사항을 시행과정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 비용발생 요인 : 교육 및 홍보에 따른 지원
- ▶ 관련 조문 : 안 제8조(교육 및 홍보)

2. 미첨부 근거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 조례안 제8조에 따른 각 호의 분야에 대한 비용 지원을 시행 예정중으로 예상 증감액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연도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 사업 지원 예산	대상 사업	비 고
2026년	4,500천원	1개 사업	

4. 작성자 : 행복나눔과장 김 미 정

● 관련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2020. 12. 29.>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사),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20. 12. 29., 2024. 1. 2.>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①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조·가공 시설, 공장, 영업장 및 판매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6. 30.>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3. 18.>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7.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

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6. 3. 6.

나. 발 의 자: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11명)

(표주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6. 3. 6.

2. 제안이유

- 장애인들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지역사회 인적 자원 강화 및 거창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2조)

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 3)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58조, 제81조
-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3조, 제21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행복나눔과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2. 24. ~ 3. 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법적 근거 이행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장애인 고용법령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필요시

-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안 제6조) 및 보조금 지원(안 제7조)

규정이 있으나, 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운영되므로 행정 혼선은 적을 것으로 예상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 내 실질적인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의지가 돋보인다 할 것임.
-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비율을 2018년 3.2%에서 2026년 3.8%로 상향 조정함.
- 반면, 현재 장애인 고용정책은 단순 반복 노동이나 단기 공공 근로에 치중되어 있어 근로 지속성이 낮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으로 실제 고용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업 능력이 높은 경증 남성 장애인 위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10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2024년 9월 국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3년(5년간)간 복지부 산하기관 28곳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부담금 납부액이 15억 6300만 원으로 확인된 바 있음.

- 이는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단순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독려를 넘어 공공부문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거창군에서도 단순히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
 - 군 직접 운영 사업 및 민간위탁 시 장애인 고용 실적을 평가 지표에 반영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근거로 군청 및 산하기관의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상향 설정하고 홍보 강화
 - 농산물 가공·포장, 관광지 환경 정비 등 지역 산업과 연계된 장애인 적합 직무를 적극 발굴
 -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상담 지원, 군 발주 사업 가산점 부여 등 사업주가 체감할 수 있는 비예산적 지원책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 비용발생 요인 :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 ▶ 관련 조문
 - 안 제6조(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 안 제7조(보조금 지원)

2. 미첨부 근거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 조례안 제6조에 따른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홍보비용으로 예상 증감액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 ▶ 조례안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은 「장애인복지법」 및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기존에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으므로 예상 증감액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

작성자 :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 관련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 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거나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6. 3. 6.

나. 발 의 자: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6. 3. 6.

2. 제안이유

-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질 높은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거창군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 생활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안 제2조)

다. 어르신 안심주치의 시행계획 등(안 제3조)

라. 어르신 안심주치의 기능 (안 제4조)

마. 지원대상(안 제5조)

바. 어르신 안심주치의 지정 등(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 3) 「지역보건법」 제11조
- 4)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보건정책과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2. 13 ~ 2026. 2. 2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참조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5) 참고: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거창군의 높은 고령화율과 경로당 중심의 생활 특성을 반영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공공보건 확대 측면에서 타당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안 제6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보건의료인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므로, 안 제4조의 '최소한의 진료행위'는 의료법상 적법한 범위 내에서 봉사적 형태로 운영 가능함.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필요시

- 예산 범위 내 시행으로 재정 탄력성은 확보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최소한의 진료’ 범위에 대한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해 시행 규칙이나 운영지침을 통한 구체적인 서비스 가이드라인 설정이 요구됨.

□ 검토결과

○ 지난해 국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최소 1개 이상 진단받고 10종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한 환자는 171만 7239명으로 집계됐으며, 65세 이상이 138만 4209명으로 전체의 80.6%에 달함.

☞ 이는 2020년 대비 52.5% 증가한 수치임.

○ 또한, 다제약물 복용자는 2020년 112만 명에서 2021년 130만 명, 2022년 141만 명, 2023년 154만 명, 지난해 163만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그 원인은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만성질환자도 함께 늘기 때문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75세 이상 환자 대상 다제병용 처방률(5개 이상의 약물을 90일 또는 4회 이상 처방받은 환자 비율)은 2021년 기준 64.2%로 OECD 평균(50.1%)을 크게 웃돌았음.

-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인구수는 2025년 1월 전체 인구 대비 20%를 넘어서고, 거창군은 올해 2월말 기준 19,954명으로 전체 인구(58,737명) 대비 33.97%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촘촘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할 것임.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취약계층 건강유지·증진)에 근거한 자치사무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의 목적, 시행 계획 수립, 기능, 지원 대상 및 지정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안 제4조 제1항에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며 영리추구를 위한 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을 진정한 봉사 활동"임을 명시하여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였음.
- 다만, 본 시책을 추진할 시에는 안 제6조 제2항의 '실비 등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무료진료나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한계를 규정해야 할 것임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어르신 안심주치의 실비 지원
- 나. 관련 조문 : 제6조(어르신 안심주치의 지정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

3. 미첨부 사유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나.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작성자 보건정책과장 조 호 경

● 관련법령 발췌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2019. 12. 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 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2. 제안이유

- 거창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체계적이고 충실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및 상호존중의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제3조)
- 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실무자문회의를 정함(안 제4조·제5조)
- 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신고자 등의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를 정함(안 제6조·제7조)
- 라. 거짓신고, 실태조사,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정함(안 제8조~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 2)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5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1. 27.~2. 2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최근 공공부문 내 인권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공무원법」 및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금지 원칙을 자치법규로 구체화하여, 소속 직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권을 보호하고 조직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효과 기대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고충처리)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괴롭힘 금지) 등 관련 법령의 취지와 부합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에 관한 자치사무 범위 내 규정으로 상충되는 사항은 없음.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2026년 예산 500만원

- 실태조사: 1백만원, 심리상담: 3백만원, 운영비 등: 1백만원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최근 매니저 갑질뿐만 아니라 보좌진 갑질 의혹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신설하여 시행하는 등 민간영역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대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4.5%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 괴롭힘 피해자 절반 이상은 ‘참거나 모른 척’ 했으며, 괴롭힘을 신고한 비율은 15.3%에 그침. 특히, 피해자 10명 중 2명 가까이가 자해나 자살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함.
- 이에 군에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과거 '관행'으로 치부되던 위계적 갑질을 '근절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수평적이고 건강한 공직 문화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공정과 인권을 중시하는 신규 공무원들의 조직 이탈(의원면직)을 방지하고 소속감을 높이는 정책적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실질적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익명성 보장이 성패의 핵심으로 신고자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비밀 유지와 감사 부서의 독립적 운영이 향후 과제임.

- 덧붙여, 연 1회 실태조사(안 제9조)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잠재적 갈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등 집행부의 강력한 운영 의지가 병행되어야만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하지만, 정당한 업무 지시와 괴롭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실무자문회의를 활성화하여 주관적 해석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해야 함.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소속 직원의 ‘인간다운 노동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피해자 심리상담, 실태조사, 예방 교육, 운영비 등

나. 관련 조문

- 1) 실무자문회의(안 제5조)
- 2)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안 제6조)
- 3) 실태조사(안 제9조)
- 4) 예방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

나. 2026년 예산 5백만원

- 1) 실태조사: 1백만원
- 2) 심리상담: 3백만원
- 3) 운영비 등: 1백만원

작성자 행정과장 이재훈

●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릴 뿐 아니라 직접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⑥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퀘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2. 제안이유

- 영유아 양육지원금의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전입세대에 지방세를 지원하는 등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인구증가 지원사업 확대·신설 및 정비함(안 제2조)
 - 1) 확대: 영유아 양육지원금 지원기간 6세 미만 ⇒ 8세 미만
 - 2) 신설: 전입세대에 지방세 지원
 - 3) 그 밖에 세부 지원사업 명확히 규정함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6년 1,751백만원 확보, 25백만원(지방세지원분)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및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1. 28.~2.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인구위기 대응력 강화) 초저출생 및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발성 지원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지원 기간을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연장하고, 출산축하금을 성장기(0~6세) 전반에 분할 지급함으로써 양육 부담 경감
- (차별화된 인센티브 도입) 전국 최초 수준의 ‘전입세대 지방세 지원’을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주 유인책 확보 및 지역 활력 제고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및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2026년 1,776백만원 확보(예정)
 - 5개년 비용추계 결과, 2030년에는 최대 7,375백만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어 향후 재정 운용 계획과의 연계 필요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지방세 지원 시 주택 소유 여부(재산세)에 따른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세부 지급기준 수립 시 면밀한 검토 필요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출생 시 단발성 또는 단기적(20~60개월)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개정을 통하여 지원 기간을 8세
 미만으로 연장하고,

○ 출산축하금을 분할 지급(0세~6세) 형태로 변경하여 1세부터
 6세까지 매년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아동의 성장
 단계별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로 판단됨.

○ 주요 항목별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현행 (기존 기준)	개정안 (변경/신설)	비고
조례 제명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 감소대응 조례	외연 확장
출산축하금	1인당 500만 원 (일시/분할)	0세 200만 원 + 1~6세 매년 300 만 원	총액 대폭 상향
양육지원금	6세 미만 (최대 20~60개월)	8세 미만(초교 입학 전까지)	기간 연장
전입지원	정착금, 기념품, 종량 제봉투 등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지원 추가	신규 인센티브
다자녀기준	두 자녀 이상 세대	다자녀 세대 (명칭 정비)	용어 현행화

- 또한, 지방세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주민세(11천원)와 재산세(평균 70천 원)를 지원할 예정으로 금액의 절대 규모보다 '세금 내주는 거창군'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할 것임.
- 다만, 재산세 지원의 경우 주택 소유 가구와 임차 가구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시행 시 임차인에 대해 상응하는 지원책(월세 지원 등과 연계) 검토가 필요함.
- 그 밖에 기존 '두 자녀 이상' 표현을 '다자녀'로 정비하고, 전입 고등학생/대학생에 대한 지원 범위를 '생활관·기숙사 비용'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관내 학교로의 유학 및 전입을 유도하는 맞춤형 지원책으로 보임.
- 하지만, 1차 연도 17억 원에서 5차 연도 73억 원으로 예산이 급증하고 재정 투입 대비 인구 유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지원금이 상향될수록 '위장전입'이나 지원금 수령 후 즉시 전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요구 된다할 것임.
- 이러한 파격적인 지원책은 다른 지자체 인구의 유입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되며 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부담이 적지 않으나,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 차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인구증가 지원사업 지원금 확대

나. 관련 조문: 인구증가 지원사업(안 제2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세출	1차 연도 (2026년)	2차 연도 (2027년)	3차 연도 (2028년)	4차 연도 (2029년)	5차 연도 (2030년)
합계	1,776	2,392	4,191	5,990	7,375
출산축하금	910	910	1,690	2,470	3,250
양육지원금	841	1,432	2,451	3,470	4,075
전입세대 지방세 지원	25	50	50	50	5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출산축하금

가. 0세 200만원, 1세~6세 해마다 300만원

나. 반기 출생아 평균 130명 기준

연도	합계	개정 전 계속지원	신규(0세), 2백만원	연차(1~6세), 3백만원
1차 연도 (2026년)	910 백만원	'25년 하반기 출생아 130명×5백만원=650백만원	'26년 상반기 출생아(0세) 130명×2백만원=260백만원	-
2차 연도 (2027년)	910 백만원	-	'26년 하반기 출생아(0세), '27년 상반기 출생아(0세) 260명×2백만원=520백만원	'26년 상반기 출생아(1세) 130명×3백만원=390백만원
3차 연도 (2028년)	1,690 백만원	-	'27년 하반기 출생아(0세), '28년 상반기 출생아(0세) 260명×2백만원=520백만원	'26년 상반기 출생아(2세), '26년 하반기 출생아(1세), '27년 상반기 출생아(1세) 390명×3백만원=1,170백만원
4차 연도 (2029년)	2,470 백만원	-	'28년 하반기 출생아(0세) '29년 상반기 출생아(0세)	'26년 상반기 출생아(3세) '26년 하반기 출생아(2세)

			260명×2백만원=520백만원	'27년 상반기 출생아(2세) '27년 하반기 출생아(1세) '28년 상반기 출생아(1세) 650명×3백만원=1,950백만원
5차 연도 (2030년)	3,250백만원	-	'29년 하반기 출생아(0세) '30년 상반기 출생아(0세) 260명 ×2백만원=520만원	'26년 상반기 출생아(4세) '26년 하반기 출생아(3세) '27년 상반기 출생아(3세) '27년 하반기 출생아(2세) '28년 상반기 출생아(2세) '28년 하반기 출생아(1세) '29년 상반기 출생아(1세) 910명×3백만원=2,730백만원

2. 양육지원금

가. 월 1회, 첫째 30만원 60개월, 둘째 이후 35만원 84개월

나. 1년 출생아 총수 260명 기준: 첫째 122명 둘째 138명

연도	합계	개정 전 계속지원	첫째 (출생 1년후부터/ 60개월×30만원)	둘째 이후 (출생 1년후부터/ 84개월×35만원)
1차 연도 (2026년)	841 백만원	'25년 출생아 첫째둘째 (20개월째) :178명×30만원×8개월 = 427백만원 '22년 이후 출생아 셋째이후 (60개월째) 115명×30만원×12개월 = 414백만원	-	-
2차 연도 (2027년)	1,432 백만원	'23년 이후 출생아 셋째이후 (60개월째) 115명×30만원×12개월 = 414백만원	'26년 출생아(12개월) 122명×30만원×12개월 =439백만원	('26년 출생아)(12개월) 138명×35만원×12개월 =579백만원
3차 연도 (2028년)	2,451 백만원	'24년 이후 출생아 셋째이후 (60개월째) 115명×30만원×12개월 = 414백만원	'26년 출생아(24개월) 122명 '27년출생아(12개월)122명 244명×30만원×12개월 = 878백만원	'26년 출생아(24개월) 138명 +'27년 출생아(12개월) 138명 276명×35만원×12개월=1,159백만원
4차 연도 (2029년)	3,470 백만원	'25년 출생아 셋째이후 (60개월째) 115명×30만원×12개월 = 414백만원	'26년 출생아(36개월) 122명 '27년 출생아(24개월) 122명 '28년 출생아(12개월) 122명 366명×30만원×12개월	'26년 출생아(36개월) 138명 '27년 출생아(24개월) 138명 '28년 출생아(12개월) 138명 414명×35만원×12개월 =1,739백만원

			=1,317백만원	
5차 연도 (2030년)	4,075 백만원	-	'26년 출생아(48개월) 122명 '27년 출생아(36개월) 122명 '28년 출생아(24개월) 122명 '29년 출생아(12개월) 122명 488명×30만원×12개월 = 1,757백만원	'26년 출생아(48개월) 138명 '27년 출생아(36개월) 138명 '28년 출생아(24개월) 138명 '29년 출생아(12개월) 138명 552명×35만원×12개월 = 2,318백만원

3. 전입세대 지방세 지원

연도	합계	주민주세	재산세
1차 연도 (2026년)	25백만원	'26년 전입세대(1호) 909명 × 11천원 = 10백만원	'26년 전입세대 214명 × 70천원 = 15백만원
2차 연도 (2027년)	50백만원	'26년 전입세대(2호) 909명 × 11천원 = 10백만원 '27년 전입세대(1호) 909명 × 11천원 = 10백만원	'26년 전입세대(2호) 214명 × 70천원 = 15백만원 '27년 전입세대(1호) 214명 × 70천원 = 15백만원
3차 연도 (2028년)	50백만원	'27년 전입세대(2호) 909명 × 11천원 = 10백만원 '28년 전입세대(1호) 909명 × 11천원 = 10백만원	'27년 전입세대(2호) 214명 × 70천원 = 15백만원 '28년 전입세대(1호) 214명 × 70천원 = 15백만원
4차 연도 (2029년)	50백만원	'28년 전입세대(2호) 909명 × 11천원 = 10백만원 '29년 전입세대(1호) 909명 × 11천원 = 10백만원	'28년 전입세대(2호) 214명 × 70천원 = 15백만원 '29년 전입세대(1호) 214명 × 70천원 = 15백만원
5차 연도 (2030년)	50백만원	'29년 전입세대(2호) 909명 × 11천원 = 10백만원 '30년 전입세대(1호) 909명 × 11천원 = 10백만원	'29년 전입세대(2호) 214명 × 70천원 = 15백만원 '30년 전입세대(1호) 214명 × 70천원 = 15백만원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퀘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2. 제안이유

- 거창군의 청년이 결혼하도록 북돋우고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결혼장려금 제도를 확대·보완하는 등 청년이 거창군에 거주·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자치법규 입안원칙,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정비함(안 제6조·제10조·제12조·제21조)
- 나. 생활안정 지원사업 변경·확대함(안 제16조의2)
 - 1) 사업명 변경: 결혼축하금 ⇒ 결혼장려금
 - 2) 사업 확대
 - (현행)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추가) 주택 구입비용이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6년도 예산 654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및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1. 28.~2.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10조의3)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대출이자 지원 범위를 전세에서 '주택 구입'까지 확대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자가 마련과 장기 정착 유도
- 명칭 변경(축하금→장려금) 및 지원 체계 보완을 통해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장려 분위기 확산
- 위원 해촉 사유에 성범죄 조항을 신설하여 도덕성을 강화하고, 간사 임명 방식을 개선하여 운영에 효율성 제고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복지증진) 및 「청년기본법」 제3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2026년 654백만원 확보

- 5개년 비용추계 결과, 2030년에는 결혼장려금 누적 지급으로 인해 약 1,554백만원까지 예산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수혜 형평성) 주택 구입 이자 지원 시, 자산 수준에 따른 역차별 논란이 없도록 소득 및 주택 가액 등 세부 기준 마련 필요
- (중복지원 방지) 인구증가 지원조례 등 타 조례상의 주거 혜택과 중복 수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5년간(기존 3년간) 분할 지원(연 200만 원 예상)하고, 주택 구입 대출이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려는 것으로 장기 분할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상시 거주를 유도하는 데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주택 구입 비용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자산 형성 능력이 있는 일부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 선정 시 소득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할 것임.
- 또한,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근 공공 위원회 위원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청년이 살고 싶은 거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할 것임.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확대, 주택 구입비용 대출이자 지원 신설

나. 관련 조문: 생활안정 지원사업(안 제16조의2)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군비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4차연도 (2029년)	5차연도 (2030년)
결혼장려금	600,000	800,000	900,000	1,200,000	1,500,000
주택구입 비용 대출 이자지원	54,000	54,000	54,000	54,000	54,000
총계	654,000	854,000	954,000	1,254,000	1,554,00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2030년 기준 결혼장려금 예산 1,500,000천원 정도

가. 지원대상: 관내 19세~45세 청년 신혼부부

나. 세부내역

1) 신혼 1년차: 300,000천원 = 2,000천원×150명

2) 신혼 2년차: 300,000천원 = 2,000천원×150명

3) 신혼 3년차: 300,000천원 = 2,000천원×150명

4) 신혼 4년차: 300,000천원 = 2,000천원×150명

5) 신혼 5년차: 300,000천원 = 2,000천원×150명

2. 주택구입비용 대출이자 지원 예산 54,000,000원 정도

가.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잔액 5,000만원의 3%

나. 세부내역: 54,000,000원 = 1,500천원×36명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퀘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2. 제안이유

- 한마음도서관의 제적·폐기 도서를 군민에게 무상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의 재활용은 물론 군민의 독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도서관법」에 따른 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명·제1조·현행 제3조·제8조)
- 나. 제적·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를 신설함(안 제8조)
- 다. 시설 현행화,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3조·제4조·제6조·제7조·제10조·제13조)
- 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을 신설함(안 제20조·제21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도서관법」 제29조·제34조·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별표7
 - 2) 「지방자치법」 제161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1. 29.~2.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18조)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 근거를 신설하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군민 독서 문화 활성화 도모
- 위원회 운영 절차를 명문화하고, 위원 구성을 주민대표까지
 확대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
- 위원 해촉 사유에 성범죄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로서의 도덕적 기준 정립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도서관법」 제34조(도서관운영위원회 등) 및 제45조(도서관
 자료의 폐기 등)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준수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는 별도의 추가 예산 수반 없이 자원의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짐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무상배부기준, 시설 등

구분	주요 검토 내용	비고
무상배부 기준	제8조 '상태가 양호한 도서'의 판정 기준을 도서관 내부 운영 지침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객관성 확보
시설	제3조 시설 규정에 '북카페'가 신설됨에 따라, 도서관 내 영리시설 입점 여부 및 운영 주체에 대한 검토.	수익사업 관련

□ 검토결과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의 도서가 보관 장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기 처분되고 있어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방안에 대해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음.
- 폐기되는 도서 중에는 활용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한 도서가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 개인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바
- 공공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는 도서를 개인·아동 또는 어르신 복지시설, 마을 도서관 등 무상배부 또는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함.

- 하지만, '폐기 도서'라는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오·훼손이 심한 도서가 배부 될 경우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 상태가 양호한 도서를 선별하는 객관적 기준이 부재할 경우 특혜 논란이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배부 대상 도서의 선별 기준을 내부 지침으로 명확히 수립해야 함.
-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 항목별 변경사항 대조표는 다음과 같음

구 분	현행 (기존 기준)	개정안 (변경/신설)	비 고
조례 제명	거창군립한미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거창군립한미음도서관 운영 조례	명칭 간소화 및 현행화
도서 배부	(규정 없음)	제작 폐기 도서 무상배부 신설	자원 재활용 근거 마련
시설 명칭	부속시설	부대시설	용어 정비(실태 반영)
위원 해촉	일반적 사유	성범죄 및 이동학대 전력자추가	도서관 안전성 강화
위원회 운영	규칙으로 정함	위원장 직무 및 운영 규정 명문화	자치법규 압안원칙 준수

- 성범죄 전력자 해촉 규정 신설 및 위원회 소집·의결 정족수 등 운영 절차를 명시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관의 특성상 위원 구성의 도덕적 기준을 높였음.
- 또한, 기존 '교육 및 문화계 인사' 중심에서 '이용자 및 지역 주민대표'로 위촉 범위를 확대함.
-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합치성을 확보하고, 도서관 자원의 사회적 환원을 추진하는 등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련법령 발췌

□ 「도서관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90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8.>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독서활동 지원 등 모든 유·무형 서비스를 말한다.
4. “사서”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7.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11. 11.>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나. 육군·해군·공군 등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다. 교도소·국립법무병원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

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도서관 인력·시설·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 [별표 7]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3조제3항 관련)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 다.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2.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입주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인 세제지원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령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를 확대함
(현행)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개정)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25 경감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정부합동평가 대상 필수조례로 2026. 7. 2.한 정비완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2. 3.~2. 2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창업기업 재산세 감면을 통한 투자유치와 정부합동평가 대상 필수 조례로 2026. 7. 2.까지 정비 필요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반영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최근 감면 사례가 없어 단기 세입 감소 영향 미미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기업 유치를 통한 장기적 세원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것으로

- 기존 5년간 50% 감면에서 → 최초 5년간 50% + 이후 3년간 25% 추가 감면으로 법이 허용하는 가장 높은 수준인 혜택 기간을 총 8년으로 연장함.

☞ 창업 및 사업장 신설 기업 감면 기준

대상업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준)	투자금액	고용인원
제조, 엔지니어링, 정보통신, 물류, 연구개발 등	20억 원 이상	30명 이상
관광호텔, 전문휴양업, 문화예술, 공연장 등	5억 원 이상	10명 이상
연수원,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10억 원 이상	15명 이상

※ 개발사업 시행자는 총 개발사업비 500억 원 이상

- 또한,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상황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은 지자체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정책에 부응하고, 정부합동평가 대상 필수 조례로 기한 내 (2026. 7. 2.)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임.
- 조례 개정으로 기업 유인책이 강화되면 입주 기업이 늘어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인구 유입(특히 청년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서 나타나듯 현재까지 감면 실적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기존의 인센티브 구조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이끌어내기에 미흡했음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조례를 정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 확대된 감면 혜택을 핵심 무기로 삼아 승강기 및 바이오 등 우리 군의 전략적 타겟 업종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는 공격적인 유치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우량 기업 유치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것임.
- 본 조례안은 법령 준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에 따른 세입 감소
- 나. 관련 조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나. 2025년까지 감면 사례 없음

작성자 재무과장 윤 광 식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 2025. 12. 30., 2025. 12. 31.>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 12. 31.>

[본조신설 2015. 12. 29.] [시행일: 2026. 3. 31.] 제75조의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3조의3제4항·제5항, 제34조제8항·제9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 2026년 2월 1일

제2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3항,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8조제4항, 제63조제2항·제3항, 제75조의2제1항·제3항, 제75조의4제2항, 제78조의2 본문,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5조 및 제1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3조의3제4항·제5항 및 제34조제8항·제9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 규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19조 (생략)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2. 제안이유

- 거창군 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에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대상지역 : 2026. 1. 1. 현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 나. 대상면적 : 32.20km²
- 다. 읍면별 적용대상 지역

구 분	면 적(m ²)	도 시 지 역
합 계	32,200,603	거창읍, 웅양면, 마리면, 남상면, 가조면 일부 지역
거창읍	26,767,975	상림리·중앙리·대동리·대평리·김천리·송정리·장팔리·정장리·동변리·서변리·가지리·양평리·학리 일부 지역
웅양면	2,773,000	죽림리·동호리·산포리·노현리 일부 지역
마리면	455,000	영송리, 하고리 일부 지역
남상면	1,310,893	대산리·월평리 일부 지역
가조면	893,735	대초리·일부리·마상리·수월리 일부 지역

라. 고시면적 변경 내역

금회 고시면적 (2026. 1. 1. 기준)	종전 고시면적 (거창군 고시 제2024-59호)	증감 면적
32,200,603㎡	32,210,186㎡	(감) 9,583㎡

마. 고시면적 변경 사유

변경지역	계	증감면적		증 감 사유
남상면	(감) 9,583	(증) 78	(감) 9,661	거창군관리계획(재정비) 지형도면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25-38호(2025.04.2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2조, 거창군 군세 조례 제13조

나. 예산조치 : 없음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거창군 군세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5년 4월에 시행된 거창군 관리계획(재정비) 지형도면 고시 결과를 반영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 지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 남상면 일부 지역의 경우,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은 '농업진흥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용도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해 왔음.
- 용도지역 조정(공업지역→농림지역)으로 전체 고시 면적이 9,583㎡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시지역분 세입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개발 혜택이 없는 농지에

부과되던 도시지역분 세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부당한 세 부담을 경감하는 실익이 더 크다 할 것임.

- 따라서 본 동의안은 법적 절차 및 과세 원칙에 부합하므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법

-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거창군 군세 조례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 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①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변경)

1. 제안이유

- 가. 거창군은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과 공공산후조리원 등 공공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임신·출산·육아 인프라를 통합 구축하기 위하여 「거창 의료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임.
- 나. 본 사업으로 조성되는 부지의 토지이용계획 목적에 따라 행정재산 일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용도폐지) 및 일부 처분(매각)하여 사업 재원 일부를 환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위 치 : 거창읍 대평리 1364번지 일원
- 2) 사업기간 : 2023. ~ 2027.
- 3) 사업면적 : 96,638㎡ / 80필지
- 4) 사 업 비 : 32,205백만원(군비 100%)

구분	계	조사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기타비	비고
금액(백만원)	32,205	2,564	9,625	16,700	3,316	
구성비(%)	100	7.9	29.9	51.9	10.3	

5) 사업내용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부지조성

- 주요 예정 시설

(의료)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 18과300병상/응급·심혈관센터 등

(임신)행복맘센터 : 영아·임산부 관련 통합 서비스 지원

(출산)공공산후조리원 : 산후조리 및 신생아를 위한 모자동실 등

(육아)육아드림센터 : 영유아 종합돌봄시설

나. 처분재산 세부내역 : 【붙임1】참조

1) 처분면적 : 12필지 15,300㎡ 중 6,977㎡

2) 처분내역 : 준주거지역 / 근린생활시설용지(총 17블록 설정)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A1~ A4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당구장, 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방 제외)
	건폐율(%)	70% 이하	
	기준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6층 이하	

3) 처분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일반입찰

4) 가격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시가

-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

다. 추진경과

1) 2023. 3. : 거창군-대한적십자사 교환 협약 체결

2) 2023. 8.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사업 부지 확정

3) 2023. 9. :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4) 2023. 11. :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 5) 2024. 8. :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6) 2025. 3.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경상남도)
- 7) 2025. 8. : 실시계획인가 고시
- 8) 2025. 12. : 토지매입 완료(일부 수용재결)

라. 향후계획

- 1) 2026. 2. :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출
- 2) 2026. 3. : 근린생활시설 용지 감정평가 및 조성토지 공급계획 수립
- 3) 2026. 4. ~ 5. : 근린생활시설 용지 분양 홍보
- 4) 2026. 6. : 공급공고 및 일반(경쟁)입찰, 계약체결
- 5) 2026. 9. : 병원용지 등 조성원가 산정 및 계약(교환) 체결

마. 기대효과

- 1) 의료복지타운 이용자의 생활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 만족도 제고
- 2) 잔여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토지 관리의 합리성 확보
- 3) 매각 대금 확보를 통한 의료복지타운 조성 사업비 일부 환수
- 4) 공공·민간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 공간 조성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3. 검토의견

①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변경)

- 본 동의안은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의 기초 생활거점조성 부지 중 일부를 일반입찰로 매각하여 사업 재원을 환수하고 편의시설 부지를 공급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결을 받은 후, 사업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되거나 처분 대상이 추가되는 경우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사업은 거창적십자병원 이전 신축과 공공산후조리원 등 공공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임신·출산·육아 인프라를 통합 구축하기 위하여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2023.9.12.) 시 최
초로 승인 받은 건임.
-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조성된 땅 중 일부를 민간에게 매각
하는 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추가로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 당시 생산녹지지역이었으나, 경남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사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조성된 토지 일부를 민
간 분양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조성하고, 조성된 17
필지를 매각하여 사업 재원 일부를 환수하고자 하는 것임.
- 수익은 공시지가 기준 약 3억 1,313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나,
향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처분할 계획임.

- 의료복합타운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때 병원 및 조리원 이용객들이 필요로 하는 약국, 편의점, 식당 등 필수 편의시설의 자발적 형성이 유도될 것으로 보이나
- 공공부지 축소 및 잔여 부지 부족으로 향후 의료타운 확장이나 추가 공공시설이 필요할 때 가용할 수 있는 균유지가 줄어들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안건은 거창형 의료복지타운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공공(병원·복지)과 민간(근생)의 기능을 조화롭게 배치하려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이며,
-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특히 매각 대금을 통해 사업비를 일부 환수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 통과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1

처분재산 내역(토지)

○ 처분재산 내역(12필지 15,300㎡ 중 6,977㎡)

(단위 : ㎡, 원)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 가격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처분면적		
계	12필지		15,300	6,977	313,131,000	
토지	거창읍 대평리 1364-11	답	1,461	1,043	63,205,800	60,600/㎡
	거창읍 대평리 1363-1	답	1,581	780	47,268,000	60,600/㎡
	거창읍 대평리 1364-36	답	331	246	9,397,200	38,200/㎡
	거창읍 대평리 1364-37	답	608	96	3,667,200	38,200/㎡
	거창읍 대평리 1364-12	답	331	71	2,797,400	39,400/㎡
	거창읍 대평리 1364-13	답	2,172	965	38,021,000	39,400/㎡
	거창읍 대평리 1364-14	답	1,722	760	29,944,000	39,400/㎡
	거창읍 대평리 1364-1	답	1,008	84	3,309,600	39,400/㎡
	거창읍 대평리 1364-2	답	1,012	509	20,054,600	39,400/㎡
	거창읍 대평리 1364-15	답	2,046	750	29,550,000	39,400/㎡
	거창읍 대평리 1364-16	답	2,069	1,162	45,782,800	39,400/㎡
	거창읍 대평리 1364-5	답	959	511	20,133,400	39,400/㎡

○ 블록별 세부내역

(단위 : ㎡, 원)

획지 번호	위치	지번	지목	공부 면적	처분 면적	기준 가격	용도 지역	
근린생활시설용지(17블록)		12필지		15,300	6,977	313,131,000		
A1	1	거창읍 대평리	1364-11	답	1,461	426	25,815,600 (60,600/㎡)	준주거 지역
	2	거창읍 대평리	1364-11	답	1,461	465	28,179,000 (60,600/㎡)	
	3	거창읍 대평리	1364-11	답	1,461	152	9,211,200 (60,600/㎡)	
		거창읍 대평리	1363-1	답	1,581	314	19,028,400 (60,600/㎡)	
4	거창읍 대평리	1363-1	답	1,581	466	28,239,600 (60,600/㎡)		
A2	1	거창읍 대평리	1364-36	답	331	238	9,091,600 (38,200/㎡)	
		거창읍 대평리	1364-37	답	608	94	3,590,800 (38,200/㎡)	
		거창읍 대평리	1364-12	답	331	68	2,679,200 (39,400/㎡)	
	2	거창읍 대평리	1364-36	답	331	8	305,600 (38,200/㎡)	

획지 번호	위치	지번	지목	공부 면적	처분 면적	기준 가격	용도 지역	
		거창읍 대평리	1364-37	답	608	2	76,400 (38,200/m ²)	준주거 지역
		거창읍 대평리	1364-12	답	331	3	118,2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4-13	답	2,172	391	15,405,400 (39,400/m ²)	
	3	거창읍 대평리	1364-13	답	2,172	405	15,957,000 (39,400/m ²)	
	4	거창읍 대평리	1364-13	답	2,172	169	6,658,6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4-14	답	1,722	238	9,377,200 (39,400/m ²)	
	5	거창읍 대평리	1364-14	답	1,722	401	15,799,400 (39,400/m ²)	
A3	1	거창읍 대평리	1364-1	답	1,008	34	1,339,6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4-2	답	1,012	206	8,116,4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4-14	답	1,722	121	4,767,400 (39,400/m ²)	
	2	거창읍 대평리	1364-1	답	1,008	50	1,970,0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4-2	답	1,012	303	11,938,200 (39,400/m ²)	
A4	1	거창읍 대평리	1364-15	답	2,046	401	15,799,400 (39,400/m ²)	
	2	거창읍 대평리	1364-16	답	2,069	63	2,482,2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4-15	답	2,046	349	13,750,600 (39,400/m ²)	
	3	거창읍 대평리	1364-16	답	2,069	414	16,311,600 (39,400/m ²)	
	4	거창읍 대평리	1364-16	답	2,069	415	16,351,000 (39,400/m ²)	
	5	거창읍 대평리	1364-16	답	2,069	270	10,638,0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4-5	답	959	120	4,728,000 (39,400/m ²)	
6	거창읍 대평리	1364-5	답	959	391	15,405,400 (39,400/m ²)		

붙임2

위치도 및 배치도

○ 위치도



○ 배치도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증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증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8조(관리·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여야 한다.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수탁 협약 체결]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2. 배 경

- 가.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 주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수립(2023년), 우리군 참여 사업으로 지리산권 2개 사업 선정
 - ※ 지리산권 6개군 공동사업 (경남)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전남) 구례
- 나. 2025년 6개군 공동으로 사업 실행계획 수립 완료, 올해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관광분야 전문 조직 필요성 대두

3. 개 요

- 가. 협 약 명 :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위·수탁 협약
- 나. 협약기관 : 경상남도, 지리산권 6개군, 경남관광재단
- 다. 위탁사무
 - ┌ 지리산권 ESG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
 - └ 지리산권 웰니스 및 위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
- 라. 수탁자 : 경남관광재단
- 마. 기 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위탁사무의 종료일까지
- 바. 위탁예산 : 214백만원(국 107, 도 32.1, 군 74.9)

4. 사업 세부내용

가. 지리산권 ESG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

- 1) ESG가치여행 완주 인증 및 보상제도 운영
- 2) 지자체 개별 및 연계 관광상품 운영, 미션투어 개발
- 3) 성과관리 모니터링, 인건비 등

나. 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

- 1)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여행상품 운영 등)
- 2) 지리산권 연합 팝업스토어 추진, 통합 홍보
- 3)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등

5. 그간 추진사항

가. 2025. 4. : 실행계획 수립 용역 계약, 착수보고회

나. 2025. 5. ~ 10. : 중간보고회, 경남도 및 지자체⇔용역사 회의 등

다. 2025. 11. : 실행계획 수립 용역 준공

라. 2025. 11. : 웰니스 및 워케이션 팸투어 운영

마. 2026. 1. 13. : 거창군의회 사전 보고

바. 2026. 2. 24. : 협약 체결 완료

※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해 거창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타 지자체와의 공동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우선 협약 체결 후 동의 절차 추진

6. 향후계획

가. 2026. 3. : 경남관광재단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나. 2026. 4. : 사업계획서 검토·승인(경상남도, 6개 지자체)

다. 2026. 4. ~ : 사업비 교부, 지리산권 사업 추진

7. 기대효과

- 가. **지리산권 광역 브랜드 구축으로 관광경쟁력 강화**
 - 6개 군 공동 상품과 통합 마케팅 추진으로 하나의 체류형 관광지인 지리산권 인식 효과 기대
- 나. **ESG 가치여행 및 웰니스 특화로 체류·소비 확대**
 - 완주 인증제, 웰니스 및 위케이션 상품 고도화를 통해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체류형·고부가가치 관광으로 전환
- 다.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통한 사업 실행력 확보**
 - 경남관광재단 중심의 통합 기획·운영으로 사업 전문성 강화 및 성과관리 체계화

8. 검토의견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2023년 12월 문체부와 경남도를 비롯한 부산·울산·광주·전남 등 5개 광역시도가 함께 발표한 사업으로, 오는 2033년까지 10년간 단계별로 총 3조원을 투입하여 남부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관광 중심지로 조성하려는 것임.
-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경남도와 거창군을 포함한 지리산권 6개 시군이 관광 기획·상품화·마케팅을 아우르는 전문 역량이 필요함에 따라 경상남도 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지리산'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광역 관광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사업임.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단순 사실행위,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등은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같은 조례 제5조에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시함.
- 본 안건의 경우, 협약 체결 후 동의안을 제출한 사후 승인 형태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할 것임. 이는 타 시군과의 공동 보조 및 적기 추진을 위한 불가피성은 일부 인정되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민간위탁 사무를 살펴보면 지리산권 ESG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사업과 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214백만원이 소요됨.

☞ '26년 사업비 : 1,284백만원(국 642, 도 192.6, 군 449.4)

사 업 명	계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구례 (전남)
계	1,284	214	214	214	214	214	214
지리산권 ESG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	540	90	90	90	90	90	90
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744	124	124	124	124	124	124

- 거창군은 타지역이 갖지 못한 가조 온천과 창포원이라는 독보적인 치유 자원을 강점으로 활용하여, 단순 참여를 넘어 지리산권 전체를 잇는 웰니스 로드의 핵심 거점이자 종착지가 될 수 있도록 군이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임.

경상남도(이하 ‘도’ 라 한다), 진주시·의령군·함안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하 ‘시군’ 라 한다)과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 남부권광역관광 진흥사업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도와 시군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진흥사업을 재단에 위탁·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사업수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위탁사무) ① 도와 시군이 재단에 위탁하는 사무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진흥사업으로 아래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1. K-거상 관광루트 상품화(진주시, 의령·함안군)
2. 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3. 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② 재단은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있어 실행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위에 정한 사업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정부정책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와 재단이 협의하여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 ① 도와 시군은 재단에 해당 사업계획을 확정·통보하며 재단은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와 시군은 재단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재난, 기타 도가 인정하는 사유 발생으로 제4조 제1항의 사업계획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등) ① 도와 시군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의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으로 인한 대행수수료는 사업비의 4.5%로 한다. 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비의 교부신청 및 사용은 「지방재정법」,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경상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재단은 관계 법령 및 협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에 따른 도의 지시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도와 시군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재단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면 재단에 위탁한 사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와 시군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에게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단은 도와 시군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감사) ① 도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 회계처리 등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감사에 대해 서류제출, 관계자 면담 등 감사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 등이 있을 경우 재단에게 시정조치 및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실시할 수 있고, 재단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명령) ① 도는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하여 재단의 조치가 불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단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재단은 시정명령 후 20일 이내 이행결과를 도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거나, 해당 사무처리 등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7일 이내 소명할 수 있고, 도는 그 소명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을 철회할 수 있다.

③ 도는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1회에 한해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있고, 2회 이상 미이행 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민·형사상 책임) 도와 시군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재단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은 재단이 부담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은 기간 만료 전에 상호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②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와 시군은 이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재단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협약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3. 기타 재단의 중대한 하자 사유로 도가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③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2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 시군과 재단의 협의에 의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재단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도와 시군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도, 시군과 재단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도와 시군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10부 작성하여 도, 시군과 재단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2. .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진주시장 조규일 (인)

의령군수 오태완 (인) 함안군수 조근제 (인)

하동군수 하승철 (인) 산청군수 이승화 (인)

함양군수 진병영 (인) 거창군수 구인모 (인)

합천군수 김윤철 (인) (재)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 배종천 (인)